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329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32982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38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피고, 피항소인B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17.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382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21. 11.경 체결된 물품 대금 49,5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주물가공품 양도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원고와 사이에"를 "C와 사이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1.경 C으로부터 C이 거래업체에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 49,500,000원을 양도받아 자신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양도받은 물품 대금 채권을 양도 이전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증거는 녹취록(갑 제8호증), 지불각서(갑 제11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1, 2)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녹취록(갑 제8호증) 기재 내용 중에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위 녹취록은 원고가 구소로 주물가공품 양도계약의 일부 취소 등을 구할 때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위 지불각서(갑 제11호증)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양도와는 무관해 보이며,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1, 2) 또한 C이 피고에게 주물 및 소재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급한 계산서로 이 사건 채권양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정주희

판사김아영